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권칠승 · 이용선 · 김영환
김 윤 · 문금주 · 장종태
윤준병 · 이상식 · 손명수
박균택 · 한민수 · 이연희
임미애 · 이정문 · 김남희
박해철 · 이성운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,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·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. 또한,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,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

함으로써 학대·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및 제15조의4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2세 미만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”을 “자료 또는 정보를”로, “제공할 수 있다”를 “제공할 수 있고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한 경우 그 명단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총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4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하는 아동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~ 5. (생략)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한 결과 2세 미만 아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
총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
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
정하여야 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자료 또는 정보를-----

-----제공할 수 있고 실태
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한 경우
그 명단을 시·도지사 또는 시
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하
여야 한다.

③ -----

-----. 이 경우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
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해
당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여

④ ~ ⑦ (생략)	<u>야 한다.</u>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